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19.01.01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은 집합투자재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의 평가 및 분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동규정시행세칙 (이하 “관련법규”라 한다)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원 :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부서장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③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부서는 위원회의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 제4조 (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기타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 제6조 (의결방법)

- ① 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에 의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야 하며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 (회의록)

평가담당부서장은 회의를 준비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한다.

#### 제8조 (보고 및 통보)

- 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매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은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의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제9조 (평가의 원칙)

- ① 자산의 평가는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자산의 평가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자산의 평가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④ 동일 자산은 모든 집합투자기구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에 달리 정한 바가 있거나,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없고, 기타 위법의 소지가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합투자기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 (공정가액 평가)

제9조 제1항에서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 가. 채권평가회사
  - 나. 회계법인
  - 다. 신용평가업자
  - 라. 감정평가업자
  -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제 1절 지분증권 등의 평가

#### 제11조 (상장주식의 평가)

- 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산오류 등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여 거래정지가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③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12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제12조 (비상장·비등록 지분증권의 평가)

- ①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3조 (시가형성 전의 비상장주식의 평가)

- ① 시가 형성 전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구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주식과 구주식의 배당기산일이 같지 않는 경우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②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의 평가는 신주식의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공모 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전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 제14조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식은 당해 주식이 거래된 최근 거래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 제15조 (상장 폐지된 주식의 평가)

상장 폐지된 주식의 평가는 당해 거래소에서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6조 (복수 상장된 주식의 평가)

복수의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는 그 주식을 취득한 당해 거래소에서의 최종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절 채무증권 등의 평가

### 제17조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등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18조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

- ① 채무증권 등의 평가를 위하여 선정하는 채권 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일 것
  2. 채권 등의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이를 기초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격평가체계,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등을 적절히 구비하고 있을 것
- ② 평가담당자는 선정된 채권평가회사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회사를 교체하거나 평가회사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9조 (채권평가회사 제공가격의 적용방법)

- ① 위원회는 본 장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재산을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적용방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채권평가회사 제공가격의 적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3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평가

### 제20조 (파생결합증권)

- ①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 또는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 제21조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22조 (장외파생상품)

장외과생상품의 평가는 당해 장외과생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4절 기타자산의 평가

##### 제23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자산)

- ① 부동산은 취득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제19조의 채권평가회사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실물자산)

실물자산의 평가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25조 (집합투자증권)

- ① 집합투자증권은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 ②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 제26조 (대출자산의 평가)

대출채권 등의 평가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27조 (기타자산의 평가)

특별자산 및 본 장에서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자산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28조 (환율)

- ①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달러화(미국)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한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기타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일의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로 평가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외국환중개회사는 서울외국환중개회사를 말한다.

## 제4장 보칙

### 제29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이체 처리가격)

- ① 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내의 현금화되지 않은 미수금과 미지급금 이체 및 평가금액은 관련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1. 미수금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2. 미지급금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② 적용 이자율은 CD 91일물 금리로 한다.
- ③ 미수금·미지급금의 이체펀드는 신탁회사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달리 처리할 수 있다.

### 제30조 (평가오류의 수정)

- ①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② 오류수정에 따라 공고된 기준가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신탁업자에게 오류수정 내용을 통지하고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기준가격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31조 (신탁업자에 통지)

- ① 회사는 동 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4항에 따라 자산의 평가내역을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 (예외규정)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이 투자재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별도의 예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